

2024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4년 4월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 합 장 이 상



사 업 보 고 서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 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2.23	46명	▶ 정관 개정(안) 승인 ▶ 배당금의 출자전환(안) 승인 ▶ 2023년 결산보고서(안)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

나. 이 사 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2.02	10명	▶ 임원대출 신청(안) 승인 ▶ 정관 변경(안) 승인 ▶ 제규정 개정(안) 승인 ▶ 잉여금 배당방법(안) 심의 ▶ 2023년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심의
2024.03.29	8명	▶ 신규 조합원 가입 자격심사 및 가입승인 ▶ 탈퇴조합원 지분선급(안) 승인 ▶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 무 소 명	주 소	전화번호(대표)
본 점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75	053) 552-7205
대 천 지 점	대구 달서구 월암로 26 (2층)	053) 635-1688
효 성 지 점	대구 남구 신촌길 42	053) 471-0715
상 인 지 점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94	053) 638-3011
중 동 지 점	대구 수성구 청수로 23	053) 766-9411
삼성창조캠퍼스지점	대구 북구 호암로 51(벤처오피스동 103호)	053) 355-8221
한 돈 판 매 장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75 (1층)	053) 550-7834
한 돈 프 라 자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75 (2층)	053) 550-7833

나. 인원 현황

구 분		2023년 12월	2024년 3월	증 감
임 원	조 합 장(상 임)	1 (0)	1 (0)	0
	이 사(상 임)	9 (1)	9 (1)	0
	감 사(상 임)	2 (0)	2 (0)	0
직 원	기 획 · 경 제	17	18	1
	신 용	37	39	2
	비 정 규 직	9	9	0
계		75	78	3

3. 정관변경 사항

현행	개정
제7조 (광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u>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광고방법) ----- ----- ----- ----- <u>서면 또는</u> <u>문자 메시지·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u> <u>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u> <u>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u> <u>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u>----- -----.
제18조 (출자) ① (생략) ② 조합원은 500<u>좌</u>이상의 출자를 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u>좌</u>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u>10</u>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500<u>좌 이상</u>-----. ③ ----- -----. ----- <u>10 이내</u> ----- --.
제21조 (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u>품목조합연합회</u>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제21조 (우선출자) ① ----- ----- ----- -----. ----- ----- <u>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u> ----- -----.

현행	개정
제55조 (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생략) ④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5조 (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임원 (조합장은 제외한다)-----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인-----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6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 ① 1~11 (생략)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56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 ① 1~11 (현행과 같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	개정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제사업 (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9,000만원 이상 나.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제사업 을 이용한 금액 : 6,000만원 이상 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백만원 이상 ②·③ (생략) <u><신설></u>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제사업 (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9,000만원 이상 나.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제사업 을 이용한 금액 : 14,500만원 이상 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백만원 이상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 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 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 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u>선거일공고일</u> <u>이후</u>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 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제6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선거일공</u> <u>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u> ----- -----.
제67조 (위원회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u>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u> <u>중에서</u>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사 무에 종사한다.	제67조 (위원회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조합</u> ----- ----- ----- -----.

현행	개정
제69조 (피선거권) ① (생략) 1. (생략)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u>우리조합 · 다른조합 ·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 상임이사 ·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한 자 아니한 사람</u>	제69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우리조합 · 다른조합 · 연합회 · 중앙회</u> ----- ----- ----- ----- ----- ----- ---<u>감사위원장</u>----- -----<u>(조합공동사업법인</u>----- ----- ----- ----- ----- ----- ----- ----- -----
제70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u>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u>	제70조(선거공고) -----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70조의2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70조의2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75조의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생 략) <u>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u>	제75조의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 ----- -----. (헌행과 같음) <u>전자우편</u>을 전송하는 방법
제98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생 략)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우리조합 · 다른조합 · 연합회 · 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 · 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u>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u>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u>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u>	제98조 (피선거권) ----- ----- --. (헌행과 같음) ----- ----- ----- ----- ----- ----- ----- <u>조합원인</u> ----- ----- ----- -----. (헌행과 같음) ----- -----<u>이사의 직을 사직함</u> ----- ----- ---<u>그</u>----- --

현 행	개 정
제104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u>이사정수</u> 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4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 -----.
제106조 (자격제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 략)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u>조합원</u> 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5. <u>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u> 한 사람	제106조 (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조합원인 -- ----- ----- 3. · 4. (현행과 같음) 5. <u>다른 조합</u> ----- -----이사의 직을 사직함 ----- ----- ----- -그----- ----
제110조 (자격제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 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u> 한 사람	제110조 (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 ----- ----- ----- -----

현행	개정
제112조 (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u><단서 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u><단서 신설></u>	제112조 (선거절차) ① ----- ----- ----- -----단수 또는 복수----- -----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 -----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7조 (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u>	제117조 (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조합</u> ----- ----- ----- -----
제138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u>	제138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 -----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

현 행	개 정
제138조의2 (운영의 공개) ① (생 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u>송부</u>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서면 또는 문자 <u>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u>하 <u>여야 한다.</u>
<u><신 설></u>	제141조의2 (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조합원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 동물병원 수의사의 임신진단, 질병 검사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후계농 육성을 위한 올드림에듀 6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축보험료 지원사업, 조합원 가족 장학금 지원, 올해부터 대상 폭을 확대한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조합원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1월달 사료가격을 33원(kg당)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올드림 갓난돼지 사료출시, MP 사료 등 선택의 폭을 대폭 넓히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삼페스티벌(3월15일~17일) 개최, 바로마켓 참여,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하여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한 올드림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금융환경의 변화와 각종규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협은 대출금잔액이 전년 동월대비 17,573백만원 증가하여 4.75%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4천5백억원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2023년 상호금융대상 발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업적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비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농협은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전국 평균대비 월등히 낮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으로 조합의 수익구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사업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및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통한 농업, 농촌,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024년 3월말 (B)	달 성 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 장 률
경 제 사 업		144,483	33,717	23.34	31,589	2,128	6.74
	판 매	94,770	22,208	23.43	20,981	1,227	5.85
	구 매	49,679	11,502	23.15	10,598	904	8.53
	마 트						
	가 공						
	수수료	35	7	19.79	10	-3	-32.62
상호금융 예 수 금	잔 액	502,660	456,496	90.82	457,098	-602	-0.13
	평 잔	482,235	459,746	95.34	451,756	7,990	1.77
상호금융 대 출 금	잔 액	426,881	387,698	90.82	370,125	17,573	4.75
	평 잔	406,802	391,867	96.33	370,508	21,359	5.76
정 책 대 출 금	잔 액	91,500	85,144	93.05	79,142	6,002	7.58
	평 잔	93,830	86,402	92.08	79,081	7,321	9.26
보 험 료		7,101	1,854	26.12	1,972	-118	-5.96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9,214	I .유동부채	17,500
현금	2,073	외상매입금	271
외상매출금	96	단기차입금	8,600
재고, 생물자산	143	기타유동부채	8,629
기타유동자산	6,902	II .금융업예수금	456,496
II .금융업예치금	109,788	III .금융업차입금	85,398
III .금융업대출채권※	457,942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119
V .비유동자산	23,503	장기차입금	
투자자산	6,103	기타비유동부채	-119
유형자산	13,633	부 채 합 계	559,274
무형자산		I .출자금	20,603
기타비유동자산	3,767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333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21
		V .이익잉여금	18,883
		자 본 합 계	41,173
자산 총계	600,448	부채와 자본 총계	600,448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3월말 (A)	2024년 3월말 (B)	증 감 (B-A)
영	업 수 익	18,917	19,869	952
영	업 비 용	14,521	14,962	441
매	출 총 이 익	4,396	4,906	510
	신 용 사 업	2,995	2,778	-217
	경 제 사 업	1,400	2,128	728
관	매 비 와 관 리 비	2,340	2,430	90
영	업 손 익	2,056	2,476	420
교	육 지 원 사 업 순 비	170	248	78
영	업 외 손 익	10	-3	-13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익	1,896	2,225	329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손 익	1,896	2,225	329